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성길용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
변경·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
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
있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-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(안 제2조)
 - 월 1,100,000원 → 월 1,500,000원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4월 1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dbsgudfh@korea.kr

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1,100,000원”을 “1,5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에게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 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<u>1,1</u> <u>00,000</u>원으로 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,5</u> <u>00,000</u>원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